

의안번호	2217774
의 퇴 인	김예지 의원
회 답 일	2026.06.29.
추 계 번호	26C17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수학교의 및 각급학교의 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조 4,999억원, 2031년 1조 6,144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7조 4,786억원(연평균 1조 4,957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학급 설치 기준 강화 (안 제27조)	4,022	2,383	2,431	2,480	2,529	13,846	2,769
특수교육교원 배치 (안 제27조의2)	10,977	11,413	12,097	12,838	13,615	60,941	12,188
합계	14,999	13,797	14,528	15,318	16,144	74,786	14,957

주: 특수교육교원이 모두 정규 임용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결과이므로 기간제 교원 등 대체인력이 배치되는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를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 (통합교육)	(제5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1항)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u>2인</u>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u>2인</u> 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u>4인</u>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u>4인</u> 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의무규정
3	안 제27조의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두어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 (통합교육)	×	· 개정안은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원격수업 이수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 등이 소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 시행 시 국가 등의 경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시책의 구체사항 및 지원 단가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
2	안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27조의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①학급 설치·운영비(안 제27조)와 ②교원 인건비(안 제27조의2)의 합으로 하며,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산출
 - (학급 설치·운영비) 개정안에 따른 신규 학급 수에 학급당 설치·운영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설치·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가정
 - 모든 신규 학급이 2027년에 설치되며, 이후에는 추가적인 학급 설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교원 인건비) 개정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특수교육 교원 1명이 배치된다고 가정하며, 설립 주체를 구분하여 추계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학급·설치 운영비

- 신규 학급 수에 학급당 설치·운영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22억원, 2031년 2,529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3,846억원(연평균 2,769억원)으로 추계
 - (신규 학급 수) 개정안의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목표 학급 수에서 운영 중인 학급 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5,990개로 추정

- 「2025 특수교육통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학급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해당 수치를 준용함

[표 2] 신규 학급 수 추계

(단위: 개)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공립	1,176	1,913	999	1,179
사립	83	223	170	247
합계	1,259	2,136	1,169	1,426

자료: 「2025 특수교육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설치·운영비 단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른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를 준용하되,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학급이 신설되는 2027년은 신설 학급 설치·운영비를 준용하고, 이후 추계기간 동안 기존 학급 설치·운영비를 준용함

[표 3] 설치·운영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유치원	69,374	42,766	43,622	44,494	45,384
초등학교	65,024	37,463	38,212	38,976	39,756
중학교	66,077	37,056	37,797	38,553	39,324
고등학교	69,245	42,886	43,743	44,618	45,511

주: 2027년은 신설 학급 설치·운영비를 준용하고, 이후 추계기간 동안 기존 학급 설치·운영비를 준용함

자료: 「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추계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022	2,383	2,431	2,480	2,529	13,846	2,769
유치원	873	538	549	560	571	3,093	619
초등학교	1,389	800	816	833	849	4,687	937
중학교	772	433	442	451	460	2,558	512
고등학교	987	612	624	636	649	3,508	7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교원 인건비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설립 주체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조 977억원, 2031년 1조 3,615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6조 941억원(연평균 1조 2,188억원)으로 추계

- (교원 수)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교원 1명이 배치된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목표 교원 수에서 현원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총 23,034명으로 추정
 -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5 특수교육통계」의 수치를 준용함
 - 2027년에 특수교육교원이 일괄 충원되어 배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 추가적인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표 5] 교원 수 추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공립	1,152	11,965	4,557	3,568
사립	50	848	365	529
합계	1,202	12,813	4,922	4,097

자료: 「2025 특수교육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공립)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하여 봉급, 수당 및 기관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추계
 - (봉급) 교육공무원의 월 봉급을 준용하되 특수학교 교사의 가산호봉을 고려하여 10호봉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매년 1호봉씩 상승한다고 가정
 - (수당) 정근수당 및 가산금, 직급보조비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합으로 하며,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추계
- (사립) 상술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을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용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추계
 - 국·공립학교 교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값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하고, 이에 국가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출
 - 국가부담금 비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¹⁾ 및 동법 시행령²⁾에 따라 3.706%로 함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개인부담금)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표 6] 인건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국·공립	51,534	53,582	56,791	60,272	63,920
봉급	31,526	33,080	35,016	37,644	40,395
수당	14,027	14,256	15,115	15,516	15,935
기관부담금	5,981	6,245	6,660	7,112	7,590
사립	1,688	1,754	1,858	1,970	2,0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7] 추계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유치원	595	618	655	695	737	3,301	660
국·공립	594	617	654	694	736	3,296	659
사립	0.8	0.9	0.9	1	1	5	1
초등학교	6,180	6,426	6,811	7,228	7,666	34,311	6,862
국·공립	6,166	6,411	6,795	7,212	7,648	34,232	6,846
사립	14.3	14.9	15.8	16.7	17.7	79	16
중학교	2,355	2,448	2,595	2,754	2,920	13,072	2,614
국·공립	2,348	2,442	2,588	2,747	2,913	13,037	2,607
사립	6.2	6.4	6.8	7.2	7.6	34	7
고등학교	1,848	1,921	2,036	2,161	2,292	10,257	2,051
국·공립	1,839	1,912	2,026	2,151	2,281	10,208	2,042
사립	8.9	9.3	9.8	10.4	11.0	50	10
합계	10,977	11,413	12,097	12,838	13,615	60,941	12,188
국·공립	10,947	11,382	12,064	12,803	13,578	60,773	12,155
사립	30.3	31.4	33.3	35.3	37.4	168	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